

휴온스 이사회 규정

제정 2021년 9월 13일

개정 2022년 2월 16일

개정 2022년 4월 18일

개정 2023년 6월 13일

개정 2024년 8월 9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(주)휴온스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

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 결의사항,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,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내용을 의결하며, 주요내용은 제11조(부의안건)를 따른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

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

③ 이사회에는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7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제6조(삭제)

제7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8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45일 내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9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의2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결의방법)

① 이사회는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

제11조(부의안건)

① 이사회는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
② 이사회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
- (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2)-2 준법통제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,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- (3)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·해임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6) 주주총회의 소집
- (6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
- (7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8)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
- (9)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

- (10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
- (11)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(11)-2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12) 신주의 발행
- (12)-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13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- (14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5)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
- (15)-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5)-3 자기주식의 소각
- (16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
- (17) 분기배당의 결정
- (1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9) 간이주식교환, 소규모 주식교환,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 분할합병
- (19)-2 간이영업양도·양수·임대 등
- (20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
- (21)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
- (22)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
- (23)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
- (24) 교환사채의 발행
- (25)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
- (26)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

2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가.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
- (1) 정관 변경

- (2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(3)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4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·변경 또는 해약
- (5) 이사·감사위원의 해임
- (6) 자본금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회사의 계속
- (8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- (9) 사후설립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- (1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2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
- (13) 주식의 분할

나. 보통결의 사항

- (1) 이사, 감사위원의 선임
- (2) 이사 보수의 결정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3)-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
- (4) 현금·현물·주식배당의 결정
- (4)-2 준비금의 감소

다. 특수결의

- (1)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

3. 경영에 관한 사항

가.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

나. 사업계획의 승인

다.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승인

- 라. 공장, 사무소,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마. 경영진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
- 바.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
- 사. (삭제)
- 아. 자기자본 2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
- 자. 자산총액 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취득 및 처분
- 차. 자기자본 10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및 증설
- 카.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, 해제·해지
- 타.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
- 파.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
- 하.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
- 가.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
- 냐.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다. 근로환경 및 노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랴.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제기
- 먀.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먈.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, 관계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- 4. 회계·재무에 관한 사항
- 가. 자기자본 2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
- 나. 자기자본 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담보제공
- 다. 자기자본 10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입
- 라. 자기자본 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
- 마. 자기자본 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전 가지급 및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
- 바. 자기자본 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
- 사. 2.5억 이상의 기부

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
2.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
3.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4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

제12조(권한의 위임)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장 기타사항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필요한 경우 전항의 의사록의 부분을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한 임원 또는 업무상 관계 있는 임원에게 송부한다.
- ④ 이사회 부의 안건과 의사록은 사내 이사회 관할 부서가 보존한다.

제15조(비용지급)

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에게 회의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외이사 지원 등)

-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.
- ② 사외이사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, 내용, 그리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2조(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의 기준)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과 자산총액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다.

- ① 자기자본=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-최근 사업연도 부채총액±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, 신고,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
- ② 자산총액 =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※ (주)휴온스 이사회 규정 제·개정 이력표

제개정 이력	비고
2021. 09. 13 제정	-
2022. 02. 16 개정	일부 부의 안건 금액 기준 설정
2022. 04. 18 개정	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항 및 자구 수정
2023. 06. 13 개정	이사회종류 분류, 의결사항 포괄 반영 및 부의안건 조정, 비용지급 내용 및 자구수정
2024. 08. 09 개정	-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관련 부의안건 추가 - 기업가치 제고 계획 승인 부의안건 추가 - 사외이사 지원 규정 추가